절차적 보호조치 통지

특수교육 부문에서 부모의 권리와 책임

장애 학생의 교육에 관한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학교는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IDEA 및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모든 절차적 보호조치를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업데이트

목차

IDEA 파트 B: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 **5**

일반 정보 **6**

34 CFR §300.503 - 사전 서면 통지 6

통지 6

통지 내용 6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된 통지 6

34 CFR §300.29 - 모국어 7

34 CFR §300.505 - 전자우편 7

34 CFR §300.9 - 부모의 동의: 정의 7

동의 7

34 CFR §300.300 - 부모의 동의 7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7

주정부 보호 아동의 초기 평가를 위한 특별 규칙 8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동의 8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9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 9

기타 동의 요건 10

34 CFR §300.502 - 독립 교육 평가 10

일반 10

정의 10

공적 자금으로 평가받을 권리 10

부모 주도 평가 11

행정법 판사에 의한 평가 요청 11

공교육구 기준 11

정보의 기밀 보장 **12**

34 CFR §300.611 - 정의 12

34 CFR §300.32 - 개인 식별 정보 12

34 CFR §300.612 - 부모에 대한 통지 12

34 CFR §300.613 - 접근 권리 13

34 CFR §300.614 - 접근 기록 13

34 CFR §300.615 - 두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기록 13

34 CFR §300.616 -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13

34 CFR §300.617 - 수수료 13

34 CFR §300.618 - 부모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14

34 CFR §300.619 - 심리 기회 14

34 CFR §300.621 - 심리 절차 14

34 CFR §300.620 - 심리 결과 14
34 CFR §300.622 -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공개 동의 14
34 CFR §300.623 - 보호조치 15
34 CFR §300.624 - 정보 폐기 15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 **16**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및 심리와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의 차이점 16
34 CFR §300.151 -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 채택 16
일반 16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책 16
34 CFR §300.152 - 최소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 16
처리 기한, 최소 절차 16
기한 연장, 최종 결정, 실행 17
주정부 불만 제기 및 적법 절차 심리 17
34 CFR §300.153 - 주정부 불만 제기 17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절차 **19**
34 CFR §300.507 -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19
일반 19
부모를 위한 정보 19
34 CFR §300.508 -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19
일반 19
불만 내용 19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심리 전에 필요한 통지 20
불만 요건 충족 20
불만 수정 20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공교육구의 대응 20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21
34 CFR §300.509 - 표준 양식 21
34 CFR §300.506 - 중재 21
일반 21
요건 21
중재인의 공정성 22
34 CFR §300.510 - 분쟁 해결 절차 22
분쟁 해결 회의 22
분쟁 해결 기간 23
달력일 기준 30일의 분쟁 해결 기간에 대한 조정 23
서면 합의서 24
합의 검토 기간 24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심리 **25**
34 CFR §300.511 -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25
일반 25
공정한 행정법 판사 25
적법 절차 심리의 주제 25
심리 요청 일정 25
일정의 예외 25
34 CFR §300.512 - 심리에 대한 권리 26
일반 26
추가 정보 공개 26
심리에서 부모의 권리 26
34 CFR §300.513 - 심리 결정 26
행정법 판사의 결정 26
별도의 적법 절차 심리 요청 27
자문위원회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조사 결과 및 결정 27
항소 **28**
34 CFR §300.514 - 결정의 최종성 28
심리 결정의 최종성 28
34 CFR §300.515 - 심리 및 검토 일정과 편의성 28
34 CFR §300.516 – 민사 소송 및 소송 제기 기한 28
일반 28
소송 제기 기한 28
추가 절차 28
지방법원의 관할권 29
해석 규칙 29
34 CFR §300.518 -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및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 배치 29
34 CFR §300.517 - 변호사 수임료 30
일반 30
수수료 지급 30
장애 아동 징계 시 절차 **32**
34 CFR §300.530 - 학교 직원의 권한 32
사례별 판단 32
일반 32
추가 권한 32
서비스 32
장애 관련성 판단 33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33
특수 상황 33

정의 34
고지 34
34 CFR §300.536 - 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 변경 34
34 CFR §300.531 - 환경 결정 35
34 CFR §300.532 - 항소 35
일반 35
행정법 판사의 권한 35
34 CFR §300.533 - 항소 중 배치 36
34 CFR §300.534 - 아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36
일반 36
징계 사안에 대한 인지 근거 36
예외 36
인지 근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37
34 CFR §300.535 -법 집행기관 및 사법 당국에 대한 의뢰 및 조치 37
기록 전송 37
부모가 공적 자금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의 요건 **38**
34 CFR §300.148 - 일반 38
사립학교 배치에 대한 비용 상환 38
상환 제한 38

IDEA 파트 B: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

장애 학생의 교육에 관한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학교는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IDEA 및 미국 교육부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모든 절차적 보호조치를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통지서의 사본 한 부를 한 학년에 한 번만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본 한 부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초기 의뢰 또는 평가 요청 시, (2) 학년도 중 34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300.151부터 300.153까지의 규정에 따른 첫 주정부 불만을 접수한 경우 및 §300.507에 규정된 첫 번째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접수한 경우, (3) 귀하의 자녀에게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4)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4 CFR §300.504(a)]

이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에는 §300.148(공적 자금으로 아동을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 §§300.151부터 300.153까지(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 §300.300(부모의 동의), §§300.502 및 300.503(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및 사전 서면 통지), §§300.505부터 300.518까지(기타 절차적 보호조치, 예: 중재,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분쟁 해결 절차,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300.530부터 300.536까지(파트 B 규정의 하위 파트 E에 따른 절차적 보호조치), §§300.610부터 300.625까지(하위 파트 F의 정보의 기밀 보장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503 - 사전 서면 통지

통지

귀하의 공교육구는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1. 자녀의 판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 또는 변경하거나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제공을 제안합니다. 또는
2. 자녀의 판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통지 내용

서면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공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를 설명합니다.
2. 공교육구가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 공교육구가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할 때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를 설명합니다.
4.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조치 조항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5. 공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가 초기 평가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6. IDEA 파트 B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7.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과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및
8. 공교육구가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된 통지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됩니다. 및
2.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 제공됩니다.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수단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공교육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1. 통지는 구두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귀하의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번역됩니다.

2. 귀하가 통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및
3. 1항과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가 있습니다.

34 CFR §300.29 - 모국어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국어는 다음 사항을 의미합니다.

1. 해당 인물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자녀의 경우 자녀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2.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상황(아동에 대한 평가 포함)에서 아동이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또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은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 등)입니다.

34 CFR §300.505 - 전자우편

해당 공교육구가 학부모에게 이메일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서면 통지
2.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 및
3.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과 관련한 통지.

34 CFR §300.9 - 부모의 동의**:** 정의

동의

동의란 다음 사항을 의미합니다.

1. 귀하는 동의한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국어나 그 밖의 의사소통 방식(수화, 점자, 구두 의사소통 등)으로 완전히 안내받았습니다.
2. 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하여 서면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며, 동의서에는 해당 조치를 기술하고 공개할 기록(있는 경우)과 대상의 목록을 기술합니다. 및
3.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동의를 철회(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동의를 한 후 철회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는 무효화(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교육구는 동의를 철회한 후 자녀의 교육 기록을 수정(변경)하여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언급을 삭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34 CFR §300.300 - 부모의 동의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공교육구는 사전 서면 통지 및 부모의 동의 항목에 설명된 바에 따라 먼저 귀하에게 제안된 조치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귀하의 자녀가 IDEA 파트 B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교육구는 귀하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에 대해 귀하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초기 평가에 동의했다고 해서 공교육구가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교육구는 귀하께서 초기 평가와 관련된 한 서비스나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게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파트 B 요건에 따라 공교육구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녀가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시키려 하는데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거부한 경우, 해당 공교육구는 IDEA의 중재 또는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분쟁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과정을 통해 귀하의 자녀에 대한 초기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교육구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자녀를 확인하고, 식별하고, 평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 보호 아동의 초기 평가를 위한 특별 규칙

아동이 주정부 보호 아동이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구가 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하는 경우
2. 부모의 권리가 주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또는
3. 판사가 부모가 아닌 다른 개인에게 교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부여했으며, 해당 개인이 초기 평가에 동의한 경우.

IDEA에서 사용되는 주정부 보호 아동이란 아동이 거주하는 주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1. 위탁 아동
2. 주법에 따라 주정부 보호 아동으로 간주되는 아동 또는
3.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주정부 보호 아동에는 IDEA에서 사용하는 부모의 정의에 부합하는 위탁 부모가 있는 위탁 아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동의

해당 공교육구는 자녀에게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귀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공교육구는 자녀에게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귀하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가 자녀에게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러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는 경우, 공교육구는 귀하의 동의 없이 (자녀의 IEP 팀이 권고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합의 또는 결정을 얻기 위해 절차적 보호조치(중재,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분쟁 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고 공교육구가 귀하의 동의를 요청했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교육구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귀하의 자녀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및
2. 귀하의 동의를 요청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개최하거나 IEP를 개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면 공교육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사전 서면 통지 항목에 설명된 대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공교육구는 귀하의 자녀를 재평가하기 전에 귀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교육구가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 귀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및
2. 귀하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경우.

귀하가 자녀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교육구는 귀하의 동의 거부를 무효화하기 위해 중재,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분쟁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과정을 통해 자녀의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초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공교육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IDEA 파트 B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

학교는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과 주정부 보호 아동의 최초 평가를 위해 부모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공교육구가 이러한 부문에서 시도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통화 또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세부 기록
2. 귀하에게 발송된 서신 사본과 받은 답변 및
3. 귀하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한 세부 기록과 그 방문에 따른 결과.

기타 동의 요건

귀하의 동의 없이도 공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행위 또는
2. 모든 아이에게 제공되는 검사나 평가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해당 검사나 평가 전에 모든 자녀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녀를 본인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등록시켰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며, 자녀의 초기 평가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공교육구는 분쟁 해결 절차(중재,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분쟁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등)를 이용할 수 없으며, 귀하의 자녀에게 공평한 서비스(일부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할 의무도 없습니다.

34 CFR §300.502 - 독립 교육 평가

일반

아래에 설명된 대로 공교육구에서 받은 자녀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공교육구는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와 독립 교육 평가에 적용되는 공교육구의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

독립 교육 평가란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구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적 자금이란 공교육구가 평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평가가 귀하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IDEA 파트 B의 조항에 부합하며, 해당 조항은 각 주가 IDEA 파트 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 내에서 이용 가능한 주, 지방, 연방 및 민간 지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평가받을 권리

공교육구에서 받은 자녀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공적 자금으로 자녀에 대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공적 자금으로 자녀의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공교육구는 불필요하게 지체하지 않고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실행해야 합니다: (a) 자녀에 대한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는 (b) 공교육구가 심리에서 귀하가 받은 자녀 평가가 공교육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적 자금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공교육구가 심리를 요청하고 최종 결정에서 자녀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여전히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면 공교육구는 해당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구는 설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적 자금으로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제공하거나 공교육구가 실시한 자녀의 평가가 적절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공교육구가 실시한 자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IEE)를 공적 자금으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주도 평가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공적 자금으로 받거나 사적 자금으로 받은 자녀에 대한 평가를 공교육구와 공유하는 경우:

1. 귀하의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관해 해당 공교육구의 독립 교육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교육구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및

2. 귀하나 공교육구는 자녀에 관한 적법 절차 심리에서 평가 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에 의한 평가 요청

행정법 판사가 적법 절차 심리의 일환으로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평가 비용은 공적 자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공교육구 기준

독립 교육 평가가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 장소와 심사관의 자격을 포함하여 해당 평가를 시행하는 기준은 (이 기준이 귀하의 독립 교육 평가 권리와 일치하는 한) 공교육구가 평가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제외하고 공교육구는 공적 자금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기밀 보장

34 CFR §300.611 - 정의

정보의 기밀 보장 항목에서 사용된 용어:

- 파기란 개인 식별 정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제거하여 더 이상 해당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육 기록이란 34 CFR 파트 99(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 20 U.S.C. 1232g (FERPA)) 시행 규정)에서 “교육 기록”의 정의에 따라 다루는 기록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관리 또는 사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공교육구, 기관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34 CFR §300.32 - 개인 식별 정보

개인 식별 정보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a) 자녀의 이름, 부모의 이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b) 자녀의 주소

(c)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나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 또는

(d) 자녀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특성 또는 기타 정보 목록.

34 CFR §300.612 - 부모에 대한 통지

주 교육 기관은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에 대해 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주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통지가 얼마나 많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설명
2. 개인 식별 정보가 관리되는 아동에 대한 설명, 요청하는 정보의 유형, 주정부가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방법(정보 수집 출처 포함) 및 정보의 사용 목적
3. 개인 식별 정보의 저장, 제3자에 대한 공개, 보존 및 파기와 관련하여 참여 기관이 따라야 할 정책 및 절차의 요약 및
4.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과 34 CFR 파트 99의 시행 규정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이 정보와 관련된 부모와 자녀의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식별, 소재 확인 또는 평가하는 주요 활동(일명 “아동 찾기”)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통지는 주 전역의 부모에게 이러한 활동을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배포 범위를 갖춘 신문이나 기타 매체 중 하나 또는 모두에 게재하거나 공지해야 합니다.

34 CFR §300.613 - 접근 권리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라 공교육구에서 수집,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녀와 관련된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은 귀하가 요청한 경우, 불필요한 지체 없이, 그리고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관한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분쟁 해결 회의 또는 징계 관련 심리 포함) 전에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요청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4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및 해석 요청에 대해 참여 기관으로부터 답변받을 권리
2. 해당 사본을 받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참여 기관에 기록 사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 및
3. 대리인이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도록 할 권리.

참여 기관은 후견, 별거, 이혼과 같은 사항에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귀하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통지를 받지 않는 한 귀하에게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614 - 접근 기록

각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에 접근한 당사자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부모 및 참여 기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접근한 경우는 제외). 이 기록에는 접근한 당사자의 이름, 접근이 허용된 날짜 및 해당 당사자가 기록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목적이 포함됩니다.

34 CFR §300.615 - 두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기록

교육 기록에 두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정보만 열람하고 검토하거나 특정 정보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0.616 -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요청 시 각 참여 기관은 해당 기관이 수집, 관리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종류와 장소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617 - 수수료

각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라 작성된 기록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가 해당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권리 행사를 효과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른 정보를 검색하거나 조회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4 CFR §300.618 - 부모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IDEA 파트 B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된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 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개인 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참여 기관에 정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이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하기를 거부할 경우, 해당 기관은 귀하에게 거부 사실을 알려주고 심리 기회 항목에 명시된 심리에 대한 권리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34 CFR §300.619 - 심리 기회

참여 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의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 정보를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개인 정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621 - 심리 절차

교육 기록 정보에 이의 제기를 위한 심리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620 - 심리 결과

심리 결과, 참여 기관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개인 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은 정보를 변경하고 귀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리 결과 참여 기관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개인 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은 자녀에 대한 기록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자녀의 기록에 기재되는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해당 기록이나 이의 제기와 관련된 기록의 일부가 참여 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한 해당 기록도 참여 기관이 자녀의 기록 일부로 보관해야 합니다. 및
2. 참여 기관이 자녀의 기록이나 이의 제기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할 경우, 그 설명도 해당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34 CFR §300.622 -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공개 동의

해당 정보가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고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 기관 관계자 이외의 당사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IDEA 파트 B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참여 기관 관계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성년이 된 적격 아동의 동의는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기관 관계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공교육구에 속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이라면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공교육구 관계자와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공교육구 관계자 간에 자녀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4 CFR §300.623 - 보호조치

각 참여 기관은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 관계자 1명은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이 유지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 파트 B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에 따른 해당 주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교육이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은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 내 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최신 목록으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34 CFR §300.624 - 정보 폐기

공교육구는 IDEA 파트 B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된 개인 식별 정보가 더 이상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때 귀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기록, 수강 수업, 이수한 학년, 이수한 연도에 대한 영구 기록은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및 심리와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의 차이점

IDEA의 파트 B 규정에서는 주정부 불만 제기 및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와 심리에 관한 각각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개인이나 조직은 공교육구, 주 교육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 기관이 파트 B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정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공교육구만 장애 아동의 판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자는 제안 또는 이에 대한 거부나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 제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교육 기관의 직원은 기간이 정당하게 연장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주정부 불만을 해결해야 하지만, 공정한 행정법 판사는 귀하나 공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분쟁 해결 절차 항목에서 본 문서에서 설명된 것처럼 해결 기간이 종료된 후 달력일 기준 45일 이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심리하고(해결 회의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정부 불만 및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분쟁 해결 및 심리 절차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 교육 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귀하 또는 다른 당사자가 표준 양식 항목에 설명된 대로 주정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34 CFR §300.151 -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 채택

일반

각 주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서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 다른 주의 조직이나 개인이 제기한 불만을 포함한 모든 불만을 해결하는 것
2. 주 교육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3.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 자립생활센터 및 기타 적절한 기관 등 부모 및 기타 관심 있는 개인들에게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를 널리 알리는 것.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책

주 교육 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주정부 불만을 해결할 때 주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1.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로,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조치(보상 서비스나 금전적 보상 등) 및
2.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적절한 미래 서비스 제공.

34 CFR §300.152 - 최소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

처리 기한, 최소 절차

각 주 교육 기관은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에 불만이 제기된 후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주 교육 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2. 불만 제기자가 불만 사항에 포함된 주장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공교육구나 기타 공공 기관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불만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 해당 기관의 선택에 따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기회 및 (b) 불만을 제기한 부모와 해당 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재 절차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기회
4.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공교육구나 기타 공공 기관이 IDEA 파트 B의 요건을 위반하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및
5. 불만 시 제기된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a) 사실 확인 및 결론 및 (b) 주 교육 기관의 최종 결정 이유.

기한 연장, 최종 결정, 실행

또한 위에서 설명한 주 교육 기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달력일 기준 60일 연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a) 특정 주정부 불만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b) 귀하와 공교육구 또는 관련된 기타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재나 대체 분쟁 해결 수단(주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을 통해 문제 해결 시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2. 필요 시 주 교육 기관의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a) 기술 지원 활동, (b) 협상, 및 (c) 규정 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가 포함됩니다.

주정부 불만 제기 및 적법 절차 심리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항목에 설명된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이기도 한 주정부 불만이 서면으로 접수되었거나 주정부 불만에 여러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하나 이상이 심리에 포함되는 경우, 주정부는 적법 절차 심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정부 불만의 모든 부분을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에 포함되지 않는 주정부 불만 내 사안은 위에서 설명한 기한과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불만에서 제기된 사안이 이전에 동일 당사자(예: 귀하와 공교육구)가 포함된 적법 절차 심리에서 결정된 경우,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은 해당 사안에 구속력을 가지며, 주 교육 기관은 불만 제기자에게 해당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교육구나 기타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심리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주 교육 기관이 해결해야 합니다.

34 CFR §300.153 - 주정부 불만 제기

조직 또는 개인은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서명된 주정부 불만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불만 제기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공교육구나 기타 공공 기관이 IDEA 파트 B 또는 34 CFR 파트 300의 규정 이행 요건을 위반했다는 진술
2. 이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3.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및
4. 특정 아동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a. 해당 아동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b. 해당 아동이 다니는 학교 이름
 c. 주거가 불안정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해당 아동의 연락처 정보와 아동이 다니는 학교 이름
 d.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아동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및
 e. 불만이 제기될 당시 당사자가 알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한 문제의 해결 방안.

불만은 주정부 불만 제기 절차 채택 항목에 설명된 대로 불만이 접수되기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행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주정부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주 교육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을 담당하는 공교육구나 기타 공공 기관에 불만 제기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절차

34 CFR §300.507 -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일반

귀하 또는 공교육구는 아동의 판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자는 제안 또는 이에 대한 거부나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 제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에는 귀하 또는 공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한 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면 위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교육구는 불만 시 제기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명백하게 허위로 설명한 경우 또는
2. 공교육구가 IDEA 파트 B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숨긴 경우.

부모를 위한 정보

공교육구는 귀하가 해당 정보를 요청하거나 귀하 또는 공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귀하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34 CFR §300.508 -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일반

심리를 요청하려면 귀하나 공교육구(또는 귀하의 변호사나 해당 공교육구의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불만은 아래에 나열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주 교육 기관에 불만서의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 내용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이름
2. 아동의 거주지 주소
3. 아동이 다니는 학교 이름
4. 아동이 주거지가 불안정한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아동의 연락처와 해당 아동이 다니는 학교 이름

5.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와 관련된 아동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및
6. 불만이 제기될 당시 불만 제기 당사자(귀하 또는 공교육구)가 알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한 문제의 해결 방안.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심리 전에 필요한 통지

귀하나 공교육구는 귀하나 공교육구(또는 귀하의 변호사 또는 해당 공교육구의 변호사)가 위에 나열된 정보를 포함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적법 절차 심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만 요건 충족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가 진행되려면 요건이 충분하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는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를 접수한 당사자(귀하 또는 공교육구)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5일 이내에 행정법 판사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가 위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지를 받은 후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신자(귀하 또는 공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행정법 판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가 위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즉시 귀하와 공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만 수정

귀하나 공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불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은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분쟁 해결 절차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분쟁 해결 회의를 통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해결할 기회를 가집니다. 또는
2. 늦어도 적법 절차 심리 시작 5일 전까지는 행정법 판사가 변경 허가를 내립니다.

불만 제기자(귀하 또는 공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변경하면 (불만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15일 이내의) 분쟁 해결 회의 일정과 (불만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의) 분쟁 해결 기간은 수정된 불만이 제기된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공교육구의 대응

공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에 포함된 주제와 관련하여 사전 서면 통지 항목에 설명된 대로 귀하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1. 공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에서 제기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이유에 대한 설명

2. 자녀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과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3. 공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 등에 대한 설명 및
4. 공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된 조치와 관련된 다른 요인에 대한 설명.

위 1~4항목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공교육구는 귀하의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위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공교육구의 대응이라는 하위 항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접수한 당사자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만 제기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34 CFR §300.509 - 표준 양식

주 교육 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귀하 및 다른 당사자가 주정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정부나 공교육구는 이러한 표준 양식의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나 주정부 불만 제기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표준 양식이나 다른 적절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06 - 중재

일반

공교육구는 귀하와 공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을 포함하여 IDEA 파트 B에 따른 모든 사안과 관련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재는 IDEA 파트 B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항목에 설명된 대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요건

절차는 중재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귀하와 공교육구 모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적법 절차 심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IDEA 파트 B에 명시된 다른 권리를 거부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 및
3. 효과적인 중재 기법에 대해 훈련받은 적격하고 공정한 중재인이 진행할 것.

공교육구는 중재 절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 부모와 학교가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대체 분쟁 해결 기관 또는 해당 주의 부모 교육·정보 센터나 지역사회 부모 리소스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자 및
2. 귀하에게 중재 절차의 이점을 설명하고 중재 절차의 이용을 권장하는 자.

주정부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중재인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 교육 기관은 중재인을 무작위, 순환 또는 기타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회의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비용을 책임집니다.

중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각 회의는 적시에 일정을 잡고 귀하와 공교육구에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귀하와 공교육구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양측은 해결 내용을 명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1. 중재 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며, 이후 적법 절차 심리나 민사 소송(법원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및
2. 귀하와 공교육구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공교육구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합니다.

서명된 서면 중재 합의서는 관할권이 있는 주 법원(주법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이나 미국 지방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논의는 IDEA 파트 B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의 향후 적법 절차 심리나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

중재인:

1. 자녀의 교육이나 돌봄에 관여하는 주 교육 기관 또는 공교육구의 직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및
2. 중재인의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중재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관련 기관 또는 공교육구로부터 중재인으로 활동한 대가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교육구 또는 주정부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4 CFR §300.510 - 분쟁 해결 절차

분쟁 해결 회의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리고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공교육구는 귀하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에 명시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원과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

1. 공교육구를 대리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공교육구의 대리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2.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는 한 공교육구의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공교육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귀하의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과 불만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여 공교육구가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 해결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귀하와 공교육구가 해당 회의를 포기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2. 귀하와 공교육구가 중재 항목에 설명된 중재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분쟁 해결 기간

공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분쟁 해결 절차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당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적법 절차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리 결정 항목에 설명된 최종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의 발행을 위한 달력일 기준 45일의 기한은 달력일 기준 30일의 분쟁 해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달력일 기준 30일의 분쟁 해결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귀하와 공교육구가 모두 분쟁 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분쟁 해결 절차와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이 지연됩니다.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노력을 문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분쟁 해결 회의 참석을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공교육구는 달력일 기준 30일의 분쟁 해결 기간이 종료된 후 행정법 판사에게 귀하의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입증하는 문서에는 공교육구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위해 시도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통화 또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세부 기록
2. 귀하에게 발송된 서신 사본과 받은 답변 및

3. 귀하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한 세부 기록과 그 방문에 따른 결과.

공교육구가 귀하의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5일 이내에 분쟁 해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분쟁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행정법 판사에게 달력일 기준 45일의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력일 기준 30일의 분쟁 해결 기간에 대한 조정

귀하와 공교육구가 서면으로 분쟁 해결 회의를 포기하는 데 합의하면 달력일 기준 45일간의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이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중재나 분쟁 해결 회의가 시작된 후 달력일 기준 30일의 분쟁 해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하와 공교육구가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서면으로 합의하면, 달력일 기준 45일간의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이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와 공교육구가 중재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측이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면 달력일 기준 30일의 분쟁 해결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 기간 중 귀하나 공교육구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위한 달력일 기준 45일의 기한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서면 합의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분쟁 해결 회의에서 도출된 경우, 귀하와 공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귀하와 공교육구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공교육구의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및
2. 관할권이 있는 주 법원(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거나 주정부에 분쟁 해결 합의의 집행을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제도나 절차가 있는 경우 주 교육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검토 기간

귀하와 공교육구가 분쟁 해결 회의의 결과로 합의에 이른 경우, (귀하 또는 공교육구 중) 어느 한쪽이든 귀하와 공교육구 양측이 해당 합의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심리

34 CFR §300.511 -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일반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귀하나 분쟁과 관련된 공교육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및 분쟁 해결 절차 섹션에 명시된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주법에 따라 적법 절차 심리 소집 권한이 노스캐롤라이나 행정심리사무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행정법 판사

행정법 판사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 또는 돌봄에 관여하는 주 교육 기관 또는 공교육구의 직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행정법 판사로 근무하기 위해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심리에서 행정법 판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IDEA의 조항, IDEA와 관련된 연방 및 주 규정, 연방 및 주 법원의 IDEA 해석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및
4. 심리를 진행하고, 적절한 표준 법률 관행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의 주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공교육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적법 절차 심리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리 요청 일정

귀하 또는 공교육구는 해당 문제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정의 예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면 위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교육구가 귀하가 불만을 제기한 문제나 사안을 해결했다고 명시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또는
2. 공교육구가 IDEA 파트 B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숨긴 경우.

34 CFR §300.512 - 심리에 대한 권리

일반

귀하는 적법 절차 심리에서 스스로를 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와 관련된 심리 포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장애 아동 문제에 대해 변호사 및/또는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동행과 조언을 받을 권리
2. 적법 절차 심리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
3. 증거를 제시하고 대면하며, 반대 심문하고,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
4. 심리 전에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에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5. 심리에 대한 서면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전자, 축어적 기록을 받을 권리 및
6. 사실과 판결에 대한 서면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전자 판결 자료를 받을 권리.

추가 정보 공개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전까지 귀하와 공교육구는 해당 날짜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와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한 권고 사항 중 심리에서 귀하 또는 공교육구가 사용할 예정인 모든 자료를 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리에서 관련 평가나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부모의 권리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심리에 자녀가 참석하게 할 권리
2. 심리를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 및
3. 심리 기록, 사실 확인 결과, 결정을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

34 CFR §300.513 - 심리 결정

행정법 판사의 결정

귀하의 자녀가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FAPE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와 주장에 근거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반(“불완전한 IEP 팀” 등)에 대해, 행정법 판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반이 있을 때만 귀하의 자녀가 FAPE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 권리가 침해를 받은 경우

2. 귀하가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상당히 침해된 경우 또는
3. 귀하의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에서 설명한 어떠한 조항도 행정법 판사가 공교육구에 IDEA 파트 B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조치에 관한 섹션(34 CFR §§ 300.500부터 300.536까지)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적법 절차 심리 요청

IDEA 파트 B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항(34 CFR §§ 300.500부터 300.536까지)의 어떠한 내용도 이미 제출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과 별개의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문위원회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조사 결과 및 결정

주 교육 기관은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주 특수교육 자문 위원회에 적법 절차 심리 또는 항소의 결과와 결정을 제출합니다. 및
2. 그 결과와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항소

34 CFR §300.514 - 결정의 최종성

심리 결정의 최종성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와 관련된 심리 포함)에서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다만, 심리에 관여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공교육구)는 민사 소송 및 소송 제기 기한 항목에 설명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15 - 심리 및 검토 일정과 편의성

주 교육 기관은 분쟁 해결 회의를 위한 달력일 기준 30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달력일 기준 45일 이내 또는 달력일 기준 ***30***일의 분쟁 해결 기간에 대한 조정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조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달력일 기준 4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심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및
2. 결정문 사본은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행정법 판사는 위에서 설명한 달력일 기준 45일의 기간을 지나도 당사자(귀하 또는 공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각 심리는 귀하와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34 CFR §300.516 – 민사 소송 및 소송 제기 기한

일반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에서 내린 결과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귀하나 공교육구)는 적법 절차 심리의 주제로 다뤄진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권이 있는 주 법원(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공교육구)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력일 기준 90일 이내에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가 절차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행정 절차의 기록을 제공받습니다.
2. 귀하의 요청 또는 공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언을 심리합니다. 및

3. 증거의 우위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책을 허용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는 사법적 구제책에 사립학교 등록금 환급과 보상 교육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관할권

미국 지방법원은 분쟁 금액과 관계없이 IDEA 파트 B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 규칙

IDEA 파트 B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헌법, 1990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73년 재활법 제5편(제504조)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권리, 절차 및 구제책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에 따라 IDEA 파트 B에서도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는 IDEA 파트 B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까지 위에서 설명한 적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즉, IDEA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과 중복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책을 받으려면 먼저 IDEA에 따른 행정적 구제책(즉,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분쟁 해결 회의를 포함한 분쟁 해결 절차,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절차)을 이용한 후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4 CFR §300.518 -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및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 배치

장애 아동 훈육 시 절차 항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이 전달되면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나 법원 소송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귀하와 주 또는 공교육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녀는 현재 교육 배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이 공립학교 초기 입학 신청과 관련된 경우, 귀하의 동의하에 자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가 IDEA 파트 C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IDEA 파트 B에 따른 서비스로 전환하는 아동의 파트 B 최초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것이고, 해당 아동이 3세가 되어 더 이상 파트 C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공교육구는 해당 아동이 받던 파트 C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이 IDEA 파트 B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고, 귀하가 처음으로 해당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교육구는 분쟁의 대상이 아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귀하와 공교육구가 모두 동의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적법 절차 심리에서 행정법 판사가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면 해당 배치는 자녀의 현재 교육 배치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나 법원 소송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녀는 해당 배치에 계속 머무릅니다.

34 CFR §300.517 - 변호사 수임료

일반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가 승소할(이길) 경우, 소송 비용의 일부로 귀하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승소한 주 교육기관 또는 공교육구에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비용은 귀하의 변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a) 법원이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거나, 소송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b) 해당 소송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거나, 소송의 근거가 없게 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한 경우 또는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승소한 주 교육기관 또는 공교육구에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귀하의 적법 절차 심리 요청 또는 이후 법원 소송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해당 소송 또는 절차(심리)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해당 비용은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노스캐롤라이나의 행정법 판사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지급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합니다.

1. 수수료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발생한 지역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수수료 산정 시 보너스나 배수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DEA 파트 B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 서면 합의 제안을 받은 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도 상환할 수 없습니다.
 a. 제안은 연방 민사소송법 제68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거나 적법 절차 심리 또는 주 차원 검토의 경우에는 절차가 시작되기 달력일 기준 10일 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b. 제안이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수락되지 않는 경우 및
 c. 법원이 최종적으로 귀하에게 인정된 구제책이 합의 제안보다 귀하에게 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러한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승소하고 합의 제안을 거부한 데 상당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 회의가 행정 절차 또는 법원 소송의 결과로 개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의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중재 항목에 명시된 중재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항목에 설명된 분쟁 해결 회의는 행정 심리나 법원 조치의 결과로 소집된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변호사 수임료 조항에 대한 목적상 행정 심리나 법원 조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IDEA 파트 B에 따라 지급되는 변호사 수임료를 적절히 감액합니다.

1. 귀하나 변호사가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습니다.
2. 지급이 승인된 그 외 변호사 수임료 금액이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기술, 평판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요율을 부당하게 초과합니다.
3.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소요된 시간과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했습니다. 또는
4. 귀하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항목에 설명된 적법 절차 요청 통지를 통해 적절한 정보를 공교육구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주정부 또는 공교육구가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거나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조치 조항에 따른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없습니다.

34 CFR §300.530 - 학교 직원의 권한

사례별 판단

학교 직원은 학생 행동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 장애 아동에 대해 다음 징계 관련 요건에 따라 배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 직원은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장애 아동을 현재 배치에서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 다른 환경 또는 정학으로 연속 수업일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은 동일 학년도에 발생한 별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추가로 연속 수업일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을 교육 환경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리가 배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정의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 변경 항목 참조).

장애 아동이 동일 학년도에 총 수업일 **10**일 동안 현재 배치에서 분리된 경우, 공교육구는 해당 학년도에 이후 추가로 분리되는 기간 동안 아래의 서비스 항목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권한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행위가 해당 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장애 관련성 판단 하위 항목 참조), 그리고 징계로 인한 배치 변경이 연속 수업일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 직원은 장애 아동에게 비장애인 아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아래 서비스 항목에 설명된 대로 해당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IEP 팀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공교육구는 해당 학년도에 장애 아동 또는 비장애인 아동이 현재 배치에서 수업일 **10**일 이하로 분리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이 수업일 **10**일 넘게 현재 배치에서 분리되는 경우, 해당 행동이 장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장애 관련성 판단 하위 항목 참조) 특수 상황으로 분리된 경우(특수 상황 하위 항목 참조),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아동이 다른 환경(임시 대안 교육 환경일 수도 있음)에서 일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및
2. 필요에 따라 기능적 행동 평가와 행동 중재 서비스 및 행동 위반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시정 조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같은 학년도에 현재 배치에서 수업일 **10**일 동안 분리된 후, 그리고 현재 분리 기간이 연속 수업일 **10**일 이하이고, 분리가 배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아래 정의 참조), 학교 직원은 해당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 중 최소 한 명과 협의하여 아동이 다른 환경에서 일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분리가 배치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 변경 항목 참조), 아동의 IEP 팀은 아동이 다른 환경(임시 대안 교육 환경일 수 있음)에서도 일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장애 관련성 판단

학생 행동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장애 아동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수업일 **10**일 이내에(연속 수업일 **10**일 이하의 분리이며 배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공교육구, 귀하 및 IEP 팀의 기타 관련 구성원(귀하와 공교육구가 결정)은 아동의 IEP, 교사의 관찰 내용 및 귀하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기록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1. 문제의 행위가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아동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2. 문제의 행위가 공교육구가 아동의 IEP를 이행하지 못한 데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경우.

공교육구, 귀하, 아동 IEP 팀의 다른 관련 구성원들이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동은 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공교육구, 귀하, 해당 아동의 IEP 팀의 다른 관련 구성원들이 문제의 행동이 공교육구가 IEP를 이행하지 못한 데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교육구는 해당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공교육구, 귀하, IEP 팀의 다른 관련 구성원들이 해당 행위가 아동의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면 IEP 팀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배치의 변경을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공교육구가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을 위한 행동 중재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는
2. 이미 행동 중재 계획이 수립된 경우, 행동 중재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아래 특수 상황 하위 항목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교육구는 행동 중재 계획 수정의 일환으로 귀하와 교육구가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녀를 원래 배치 장소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특수 상황

자녀의 행동이 장애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 직원은 학생을 최대 수업일 45일 동안 임시 대안 교육 환경(자녀의 IEP 팀에서 결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1. 주 교육 기관 또는 공교육구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학교 주관 행사에서 무기(아래 정의 참조)를 휴대하거나 무기를 소지한 경우
2.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 교육 기관이나 공교육구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 주관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아래 정의 참조)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물질(아래 정의 참조)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또는
3.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 교육 기관이나 공교육구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 주관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아래 정의 참조)를 입힌 경우.

정의

규제 물질이란 규제 물질법(21 U.S.C. 812(c))의 제202조(c)의 별표 I, II, III, IV 또는 V에 명시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법 약물은 규제 물질을 의미하며;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소지되거나 사용되는 규제 물질, 또는 해당 법 또는 연방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신체적 상해는 미국 법전 18편 1365조 (h)항 (3)호에 따라 “중대한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로 명시된 의미입니다.

무기는 미국 법전 18편 제930조 제1항 (g) 제2호에 명시된 “위험한 무기”라는 용어에 부여된 의미입니다.

고지

학생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자녀의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 분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날 해당 공교육구는 귀하에게 해당 결정을 통지하고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536 - 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 변경

장애 아동을 현재 교육 배치에서 분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치 변경에 해당합니다.

1. 분리 기간이 연속 수업일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귀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일련의 분리 조치를 받은 경우.
 a. 일련의 분리 기간이 한 학년도에 총 수업일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b. 자녀의 행동이 이전에 일련의 분리를 초래한 사건에서 나타난 자녀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 및

c. 각 분리 기간, 귀하의 자녀가 분리된 총 기간, 각 분리 조치 간의 시간적 간격과 같은 추가 요인.

분리 패턴이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교육구에서 사례별로 판단하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적법 절차와 사법 소송을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4 CFR §300.531 - 환경 결정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 분리 및 추가 권한 및 특수 상황 하위 항목에 따른 분리에 대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

34 CFR §300.532 - 항소

일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절차 항목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러한 징계 조항에 따른 배치에 관한 결정 또는
2. 위에서 설명한 장애 관련성 판단.

공교육구는 자녀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위 참조)을 제기하여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의 권한

공정한 행정법 판사 하위 항목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법 판사가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행정법 판사가 해당 분리가 학교 직원의 권한 항목에 명시된 요건을 위반했거나 자녀의 행동이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 아동을 분리되기 전의 배치로 복귀시키도록 합니다. 또는
2. 행정법 판사가 장애 아동을 현재 배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귀하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배치를 수업일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변경하도록 명령합니다.

공교육구가 귀하의 자녀를 원래 배치 장소로 복귀시키는 것이 자녀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심리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귀하나 공교육구가 이러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절차,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심리 항목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주 교육 기관 또는 공교육구는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심리는 심리 요청일로부터 수업일 **20**일 이내에 진행되고 심리 후 수업일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귀하와 공교육구가 해당 회의를 포기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중재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통지를 받은 후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분쟁 해결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접수한 후 달력일 기준 **15**일 이내에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주정부는 신속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해 다른 적법 절차 심리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과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칙이 본 문서의 적법 절차 심리 관련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귀하나 공교육구는 다른 적법 절차 심리에서 내린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속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항소 하위 항목 참조).

34 CFR §300.533 - 항소 중 배치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귀하 또는 공교육구가 징계 사안과 관련하여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경우, 귀하와 주 교육 기관 또는 공교육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녀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학교 직원의 권한 항목에 규정되고 설명된 분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34 CFR §300.534 - 아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일반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공교육구가 (아래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귀하의 자녀가 장애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귀하의 자녀는 본 통지에 명시된 모든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사안에 대한 인지 근거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공교육구가 귀하의 자녀가 장애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께서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해당 교육 기관의 감독 또는 행정 담당자나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경우
2. 귀하께서 IDEA 파트 B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에 관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 <u>또는</u>

3. 자녀의 담임 교사나 다른 공교육구 직원이 귀하의 자녀가 보이는 특정 행동 패턴에 대해 공교육구 특수교육 담당자나 기타 감독 담당자에게 직접 우려를 표명한 경우.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구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귀하께서 자녀에 대한 평가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또는
2. 귀하의 자녀가 평가를 받고 IDEA 파트 B에 따른 장애 아동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인지 근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공교육구가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에서 설명한 징계 사안에 대한 인지 근거 및 예외 하위 항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귀하의 자녀가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유사한 행동을 하는 비장애인 아동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징계 조치를 받는 기간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는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 배치 상태에 머무르게 되며, 여기에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정학 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장애 아동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교육구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와 귀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고려하여 공교육구는 위에 설명된 징계 요건을 포함하여 IDEA 파트 B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300.535 -법 집행기관 및 사법 당국에 대한 의뢰 및 조치

IDEA의 파트 B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취하지 않습니다.

1.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또는
2.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주 법 집행기관 및 사법 당국이 연방 및 주 법률 적용에 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기록 전송

공교육구가 장애 아동의 범죄를 신고할 경우, 공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해당 기관은 범죄를 신고받은 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아동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및
2.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아동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공적 자금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의 요건

34 CFR §300.148 - 일반

IDEA 파트 B는 공교육구가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 보내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공교육구가 장애 아동의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서의 교육 비용(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비용 포함)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가 있는 지역의 공교육구는 34 CFR §§300.131부터 300.144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아동에 관한 파트 B 조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 인구에 귀하의 자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립학교 배치에 대한 비용 상환

귀하의 자녀가 이전에 공교육구의 관할하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으며, 귀하가 공교육구의 동의나 의뢰 없이 자녀를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 또는 행정법 판사는 해당 기관이 자녀에게 등록 이전에 적시에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하지 않았고 사립기관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등록 비용을 상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나 법원은 배치가 주 교육 기관과 공교육구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귀하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환 제한

위 문단에 설명된 상환 비용은 감액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해당되는 경우: (a) 귀하가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을 중단하기 전에 참석한 가장 최근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에서, 공교육구가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치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귀하의 우려 사항 및 공적 자금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려는 의사와 함께 IEP 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b)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을 중단하기 최소 10영업일(영업일에 해당하는 공휴일 포함) 전에 해당 정보를 공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을 중단하기 전에 공교육구가 자녀를 평가할 의사를 사전 서면 통지로 귀하에게 알렸지만(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 목적에 대한 설명 포함) 귀하가 자녀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3. 법원이 귀하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하지만 상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지 미제공을 이유로 상환액을 감액하거나 상환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a) 학교가 통지 제공을 방해한 경우, (b) 귀하가 위에 설명된 통지를 제공할 책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c) 위의 요건을 준수할 경우 귀하의 자녀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및
2. 법원 또는 행정법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가 필수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액을 감액하거나 상환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귀하가 영어로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b) 위의 요건을 준수할 경우 귀하의 자녀에게 중대한 정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